

제 690 호
1978.12.2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정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김인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293 호 :	서울특별시법령원사업특별외제설치조치..... 3
○ 문 명	
제 496 호 :	서울특별시경찰행정감사시행규정..... 3
○ 고 사	
제 671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적승인..... 12
제 67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2
제 674 호 :	1979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13
제 675 호 :	도시계획사업(학포) 시행허가..... 14
제 676 호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지적승인..... 15
제 677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과지정..... 1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678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20
제 679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허가	23
제 68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과지적승인	24
제 681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및도로) 변경결정및지적승인	24
제 68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25
제 683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26
제 684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31
제 685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32
제 686 호 :	노거수지정해제	32

◎ 공 고

제 477 호 :	주택개량유위한제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공람공고	33
제 478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33
제 47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완료공고	34
제 480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	34
제 482 호 :	영동 1 , 2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공람공고	34
제 483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35
제 486 호 :	KS 표시금지처분해제공고	35
제 487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36
제 488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36
제 48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37
제 490 호 :	도시개발사업무교제 4 , 5 지구규약및사업시행계획변경 공람공고	38
제 491 호 :	도시개발사업광화문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	38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병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
1978년 12월 22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93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제 1조 (설치) 시립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 및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조 (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병원의 사업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서 그 세출에 상당한다.

제 3조 (준용)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 1조에 해당되는 시립병원의 재산은 이 특별회계의 소관으로 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행정감사 시행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
1978년 12월 22일

◎ 서울특별시훈령 제 496 호

서울특별시경찰행정감사시행규정
서울특별시 경찰행정감사 시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경찰행정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서울특별시 경찰국 행정감사반 (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 제 6169 호) 및 내무부소관 행정감사규정 (내무부훈령 제 44 호)에 의거한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제 3 조 (감사의 조정통제) ① 경찰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자체감사는 이를 일원화하여 연중 정기감사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시 일괄 실시토록 한다.

② 상부지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하 "불시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기능별 관하감사(지도방문, 검열, 점검등)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전에 다음 감사 실시내용을 경찰국 경무과장(기획감사계)에게 제출하여 사전 조정통제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 실시 내역서

1. 감사목적 및 근거
2.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3.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일정

6. 감사판 편성

③ 제 2 항의 불시감사를 위한 조정통제시는 경무과 및 주무과의 문서번호로 관하에 하달하여야 한다.

④ 피감사기관인 관하각 경찰서는 본규정에 의거 조정, 통제를 받아 하달된 감사이의의 감사에 대하여는 이에 불응할 수 없다.

제 4 조 (피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은 경찰국 각과 직할대, 경찰서, 파출소 (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 5 조 (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반장, 부반장 및 감사관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경무과장으로 하고, 부반장은 경무과 기획감사계장이 되며, 감사관은 당해 사무에 능통한 경감 또는 경위급중에서 감사반장의 추천에 의하여 경찰국장이 지정한다.

② 감사반의 사무는 경무과 기획감사계에서 처리한다.

제 6 조 (감사반장 및 부반장의 임무)

① 감사반장은 감사반을 지휘 감독하며 감사수행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감사진행 및 강령계획을 피감사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② 부반장은 감사반장 유고시에

<p>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7 조 (감사관의 구분) 감사관은 경무감사관, 보안감사관, 교통감사관, 경비감사관, 작전감사관, 수사감사관, 형사감사관, 정보 1 감사관, 정보 2 감사관, 회계감사관 및 장비감사관으로 구분한다.</p> <p>제 8 조 (감사관의 자격) ① 감사관은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감사업무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업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이해력을 구비한 자 2.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용기와 인내력을 구비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p>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관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임자 (현재급 임용후 2년 미만인 자) 2. 전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p>제 9 조 (감사관의 임기) 감사관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p> <p>제 10 조 (감사관의 권한) ① 감사관은 경찰국장을 대리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의 권한을 행사한다.</p> <p>②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감사자 인회하여 봉인할 수 있으며 감사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당해 관서장 또는 대리인을 일회</p>	<p>하게 할 수 있다.</p> <p>③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관으로부터 확인 또는 질문서를 징취할 수 있다.</p> <p>제 11 조 (감사관교육)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시행전에 감사관에 대하여 감사시행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각 과장은 감사관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12 조 (경무감사관) 경무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인, 관수, 문서, 수발, 발간 및 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 2. 경찰관 및 소속공무원의 임용,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 훈련 및 무술지도 근무 경정에 관한 사항 4.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조직, 정원직제 및 경찰통제에 관한 사항 5. 경찰법령집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강의 단속, 비행에 대한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무운영에 관한 사항 <p>제 13 조 (보안감사관) 보안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구조사, 풍속경찰, 송포 화약류의 단속, 주결실관의 청구 및 노유 범상자의 보호, 기타 행정
---	---

<p>경찰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범죄의 미연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외근경찰에 관한 조사 지도와 소년보호, 기타 예방경찰에 관한 사항 3. 익사 및 폭발물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신도에 관한 사항 6. 타기관 교발사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안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p>제 14조 (교통감사관) 교통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경찰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교통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경찰관 선발기준 심사 실시 및 일상 교양에 관한 사항 3. 교통지도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운전면허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행정처분 집행에 관한 사항 6. 교통사고 수배 및 법규 위반 차량 행정처리 7. 기타 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p>제 15조 (경비감사관) 경비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호 경비에 관한 사항 2. 일반경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비상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p>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다중 범죄 진압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비상소집 실시 및 병력동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검문소 및 야간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야간운행증 발급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9. 침원경찰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10. 경찰 통신조사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통신자료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2. 유무선 통신 기제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환원 교양감독에 관한 사항 14. 기타 경비 및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p>제 16조 (작전감사관) 작전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시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작전부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전투경찰대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방어계획 및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	--

6. 향토예비군 무기 및 탄약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7 조(수사감사관) 수사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수사연구 및 기획 사법경찰관의 지도 범죄정보 및 형사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범죄 통계 및 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치장 관리 및 지문 채취에 관한 사항
4. 병무사법 처리 및 소재 수사에 관한 사항
5. 타기관 고발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참고인 예비 및 집안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무법자 관찰 보호에 관한 사항
8. 새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8 조(형사감사관) 형사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형사재에서 처리한 각종 범죄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 대기 피의자 및 일시 보호자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호실 관리 및 피의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 19 조(정보1감사관) 정보1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정보 경찰에 대한 조사 연구 기획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원조사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기록 및 정보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첩보 수집 및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0 조(정보2감사관) 정보2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대공 경찰 업무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사회 안전 업무 및 요시에 대한 사항
3. 대공 첩보 수집 및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 경찰에 관한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의사 소관 신원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의사 첩보 수집 및 분석 경

<p>가에 관한 사항</p> <p>7. 의사 공작 업무에 관한 사항</p> <p>8. 의사 범죄 및 요시에 관한 사항</p> <p>9. 기타 의사 업무에 관한 사항</p> <p>제 21 조 (회계감사관) 회계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p>1. 세출 예산 배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p> <p>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p> <p>3. 세입 및 원천세징수에 관한 사항</p> <p>4. 도급경비출납에 관한 사항</p> <p>5. 정보비출납에 관한 사항</p> <p>6.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p> <p>7. 유가 증권에 관한 사항</p> <p>8. 기타 금전 회계에 관한 사항</p> <p>제 22 조 (장비감사관) 장비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p> <p>① 물품회계</p> <p>1. 물품 출납 및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p> <p>2. 국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p> <p>② 차 탕</p> <p>1. 차량 유지 관리 및 정비 건반에 관한 사항</p> <p>2. 유류 취급 및 관리에 관한</p>	<p>사항</p> <p>3. 부속품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③ 무기탄약</p> <p>1. 무기탄약 및 무기고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 23 조 (감사명령표) ①경찰국 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감사상 필요한 사항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상 의견을 구신한다.</p> <p>②과과장은 소관 감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항목별 명명표를 작성하여 감사 시행 20일전까지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감사관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명명표(이하 "명명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명명표는 경찰 기본 업무외에 지역별 재질별 및 기타 특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p> <p>제 24 조 (수감표) ①피감사 기관에서는 수감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사 당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②전항의 감사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작로(계산서, 증빙서, 장부, 현금, 물품, 기타)를 제시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5 조 (감사상 준수사항) 감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검사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감사사항에 대하여 파소 파대 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감사중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감사 시행중 지목한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여서는 안된다.
7. 감사에 있어서 작성된 서류조서는 신중한 주의로써 정리하고 상당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8. 감사관이 감사에 관련하여 비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더욱 엄중 문책한다.

제 26 조 (감사진행 순서) ①종합감사의 감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피검사 기관의 간부급 신고
2. 점검 또는 훈련
3. 직무 경멸
4. 판내 현황 정취
5. 각기능별 감사 시행

②점검 훈련 및 직무 경멸은 피검사 기관의 장이 실시하고 감사관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검토한다.

③점검 훈련시 수첩은 감사관이 이를 확인한다.

제 27 조 (감사시행) ①종합감사는 발견적이고 지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질서 정연하고 수법적인 행동으로서 피검사 기관의 정상시 근무 상태하에서 건반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전감사관이 일선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감사와 장비감사는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8 조 (강령자로제출) ①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현지에서 사무의 개선 또는 권장사항, 요조사항, 요시정사항, 현지 교정사항 및 요건의 사항으로 구분 이를 일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사항 시정사항 및 현지 교정사항은 감사관이 각각 2부를 작성 피감사 기관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 (명정용어의 정의) ①권장사항은 경찰 기본업무 수행에 있어 성실한 근무와 창의 연구로서 그 실적이 타에 비해 월등하여 그 제도 사책상 채택될 만한 사항을 말한다.

②조사사항은 중요 위법이나 결함 사항으로서 계속 진상을 규명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실을 말한다.

③시정사항은 업무상태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또는 방침에 위배되어 있으며 명백한 규정등의 위배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현상태

가 비효율적 이거나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사항을 말한다.

④현지 교정사항은 경미한 위법 또는 결함사항을 말한다.

⑤건의사항은 감사기관의 장의 권한의 사항으로서 상부 규정이나 방침을 적용하는 경우(집행, 실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모순이나 불이익을 배제함과 법령 규정 및 방침이 없거나 불비함으로 인하여 업무능률이 저하 또는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감사관이 건의한 사항을 말한다.

제 30 조 (감사결과명정) ①감사결과에 대한 명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우수 90점 - 100점
- 2. 우 80점 - 89점
- 3. 양 70점 - 79점
- 4. 가 60점 - 69점
- 5. 불가 59점 이하

②명정의 산출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 31 조 (감사결과조치) ①감사반장은 감사기간중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업무수행을 발전하였을 때에는 현지명가시 표창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구비하고 경찰국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 불가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휘관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3개월내에 재검사를 실시한다.

③피감사 기관의 장은 규정 제 10조에 의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정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경찰국장에게 증빙서 첨부 보고하여야 하며 그 지시 사항이 피감사 기관의 권한의 외 사항이거나 또는 시정할 수 없는 비위 결함등인 경우에는 전의 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2조 (보칙) 이 감사 규정외에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감사 규정 및 치안 행정 감사 시행 세칙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 사 수 감 표

부 서 번	계 급	성 명	사무분감내용	근무기간	비 고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적승인

1. 전설부고시제 320 호('78.10.25)로
결정고시된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
기. 도로지적승인조서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
부고시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
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2.20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점	중점	비고
신설	광로		56	50	1,450	대 2-45	남서울대공원	
"	"		71	100	550	광로 55중점	"	
"	대로	2	60	30	440	"	대 2-35	

나. 광장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하리광장	111	과천면 하리 352 일대	20,00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8. 12. 21.

서울특별시장

노 선 조 서 ()결정구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지체승인	중로	1	48	20m	(1,000) 860m	도봉구번동(대 3-40)	도봉구번동산 27-6	75 ^m 지적승인 110 ^m 지적변경	
"	"	"	78	"	(4,250) 400m	도봉구쌍문동 206	도봉구쌍문동 50-2		
"	"	"	83	"	(2,250) 150m	도봉구공릉동 166B.I.	공릉동 23(중 2-124)		
"	"	"	137	"	1,000	금호동 4가(중 1-135)	성수동 1가 685-34 " 685-475		(대 2-50)
"	"	2	82	15m	(1,000) 250	면목동 472-5	면목동 1084-1 (대 3-47)		
"	"	"	97	"	(1,000) 1,100	상계동 340	상계동 200-1		
"	"	"	99	"	(1,200) 520	홍은동 48	홍은동 48(홍제국교)		
"	"	"	119	"	500	동대문구면목동 (대 3-42)	동대문구면목동 (대 2-43)		
"	"	3	62	12m	750	도봉구미아동 560-30	도봉구미아동 125-337		
"	"	"	71	"	(3,250) 440	등촌동산 64-6	등촌동 189-64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674호
1979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9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
감치할 제 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회 계 별	예 산 액
일 반 회 계	317,825,000 천원
부 별 회 계	175,905,500 "
국민주택사업비	28,702,000 "
주택개량사업비	8,110,000 "
토지구획정리비	12,233,000 "
하수처리장비	3,000,000 "

회 계 별	예 산 액
유 료 도 토 비	4,593,500 천원
의 료 보 호 기 금	1,086,000 "
재 해 구 호 비	500,000 "
수 도 사 업 비	41,867,000 "
지 하 철 운 수 사 업 비	71,779,000 "
병 원 사 업 비	4,035,000 "
* 도시재개발사업기금	46,605,700 "

◎ 서울특별시고시제 67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5 호 ('76.9.6) 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 1 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8. 12.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도봉구수유동산 129번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한국 신학 대학

3. 면적 및 규모 : 2,762㎡ (836평)

4. 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도봉구 수유동산 129 학교법인 신학대학 이준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8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1979. 5. 30.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실제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 1 과와 도봉구청에 보관함.

<p>◎ 서울특별시고시제 676 호</p> <p>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지 적 승 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5 호 (78.10.28)로 결정된 도봉구 관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다 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 획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p>	<p>제 41호(77.3.16)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12.22</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공공공지	수유동 567-58 외 5 필지	353㎡ (107평)	4.19공원입구

토 지 조 서

동 명	지 번	지 욕	지 적	비 고
수 유 동	567-81	대	13㎡ (4평)	1. 결정서도면과 일치
	567-57	"	73㎡ (22㎡)	
	567-58	"	53㎡ (16㎡)	2. 확정 측량으로 지적상이
	568-18	"	46㎡ (14㎡)	
	568-42	"	79㎡ (24㎡)	
	568-43	"	89㎡ (27㎡)	
	계			353㎡ (107㎡)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677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 건설부 고시 제 131호(76.8.2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호(76.10.2)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 강남구 잠원동 아파트지구(제 1-4지구)일부지역에 주택건설촉진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1978.12.21

서울특별시장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내역

가. 사업시행자 : (주)한양주택 배중철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강남구잠원동 137-20호의 일원 (별첨 지번조서 참조 : 16,671.9평)

다. 사업계획개요

○ 사업명 : 아파트 및 주구센터 1동(5층) 건설

○ 사업규모 : 아파트 22~42 평형 636세대

○ 사업비 : 27,310,000 원원

○ 사업기간 : 78.12~80.6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 78.12.22~78.12.28(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주택행정과) 강남구청(시민봉사실)

지 번 조 서

동 명	지 번	지번급부호	면적(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잠원동	137-20	48-1(다)	544.7중 50	국	
반포동	242-13	67	69.7	한신공영(주)	
1 지구	63-1 제비지1	67	43	시유지	

동 명	지 번	지번급 부 호	면적(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반포동	242-4	67 (가)	94.2	함 경 자	관악구방백동 1-11
"	242-6	66	268.5	한신공영(주)	
"	242-4	66 (나)	307.8	함 경 자	관악구방백동 1-11
"	242-1 -3	66 (나)	721.3중 660	(주)한양주택	
"	241-1	66	194.4중 80	(주)한양주택	
잠원동	118 120	66 (나)	629.3중 5	(주)한양주택	
1 지구	제비지 1	91	34.5	시 유 지	
반포동	236	91 (대)	13.8	한신공영(주)	
"	264-20	91 (가)	123.7	한신공영(주)	
"	242-1 -3	91 (가)	409.5	(주)한양주택	
"	241-3 -5	92	682.2	전봉자의 5	중구빌동 3가 39-16
"	241-4	92	392.4중 299	한신공영의 1	
1 지구	제비지 1	90	131	시 유 지	
"	제비지 2	90	33.7중 220	시 유 지	
반포동	208-1 -3	90	133	한신공영(주)	
"	210-4				
"	233-2				
잠원동	1-10	90 (가)	93.8	(주)한양주택	
"	1-31	90 (가)	93.8	오 무 영	중구북창동 89
반포동	238-1	90 (나)	44	(주)한양주택	
"	232	90	300.9	(주)한양주택	
"	231	90	330.9	민 성 기	강남구반포동 231
"	230	90 (가)	269.4	반 창 북	마포구원석동 1
잠원동	136-9	90-1	190.7	전역상의 1	서대문구홍은동 402-64
1 지구	제비지 1	90-1	3	시 유 지	
잠원동	137-7	90-1	189.1	오 명 근	영등포구구로동 733-36

동 명	지 번	지번급 부 호	면적(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잠원동	136-10	90-1	190	오 규 원	중구북창동 89
반포동	241-7 -8	'89(가)	264.5	한신공영(주)	
"	206	89	296.1	"	
"	207-1 -3	"	123.2	(주)한양주택	
"	207-12	"	56	"	
"	207-5	"	56	신촌화	성북구장위동 233-479
"	207-7	"	53.9	(주)한양주택	
"	207-8	"	78.4	"	
"	207-9	"	78.4	"	
"	207-10	"	78.4	"	
"	208-2	"	685 중 682	"	
"	230	89(나)	52.7	박창복	마포구현석동 1
"	208-4	89	54.8	하덕주	경기도가평군설악면 신천리 467
"	241-8 -8	93-1(가)	319.3 중 314	한신공영(주)	
1 지구	채비지 1	93-1	220 중 180	시유지	
반포동	205	93-1(나)	425 중 220	(주)한양주택	
"	207-2	93-1	140	이인우	서대문구홍제동 5-46
"	238-1	93-1(다)	348.9 중 5	(주)한양주택	
"	209	93-1(가)	306 중 45	"	
"	226-2	106	286.8	송원희 외 2	서대문구연희동 344-34
"	227	106(가)	408.8	(주)한양주택	
"	225-4	106	715.6	이필우	중구북정동 28-28
"	209	105(나)	649.3	(주)한양주택	
"	238-1	105(가)	208	"	
"	210-2 -3	105	441.1	"	
"	212	105(나)	629.7	은귀주	관악구동작동 307
"	219-1	104	290.2 중 220	(주)한양주택	

동 명	기 번	지 번 급부호	면적(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반포동	212	104(가)	403.1	은 귀 주	판악구 동작동 307
"	211	104(나)	434.65 130	"	"
"	228-1	107	587.4	이 부 남 외 4	중구 신당동 347.263
"	225-3	"	208.8	박 준 일 외 2	성동구 행당동 12-9
"	221-1	"	50	김 인 식	중구 신당동 405-5
"	221-2	"	180.8	"	"
"	221-3	"	100.8	"	"
"	221-4	"	50	"	"
잠원동	3-1	"	35.9	양 민 남	성북구 장위동 74-120
"	3-5	"	42	한 신 공 영(주)	
"	3-6	"	47.9	민 성 기	서대문구 용암동 126-26
"	3-4	"	47.9	민 성 기	서대문구 용암동 126-26
"	1-25	"	152.5	차 병 로	성북구 삼선동 2가 168
반포동	236	109(가)	364.7	한 신 공 영(주)	
잠원동	1-42	109	65.4	반 기 영	잠원동 1-42
"	1-234	109	233.8	한 신 공 영(주)	
"	1-35	109	233.8	한 신 공 영(주)	
반포동	236	109(가)	241.9	"	
잠원동	1-8	109(나)	495.4 중 260	"	
"	1-127	109(나)	495.4 중 260	"	
"	1-226	109	50.6	강 일 우	용산구 한강로 1가 275
"	1-227	"	51	지 울 남 외 3	" 한강로 2가 15
"	1-228	"	50.4	김 상 운	강남구 삼성동 1-228
"	1-225	"	53	김 춘 수	
"	1-34	"	52.4	박 지 훈	강남구 잠원동 1-34
"	1-230	"	52.5	권 점 옥	" 1-230
"	1-229	"	52.6	조 부 남	" 1-232
"	1-231	"	52.4	강 정 기	" 1-231

동 명	지 번	지 번 급부호	면적(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잠원동	1-232	109	56.4	조 부 남	강남구 잠원동 1-232
반포동	214-4	110	129.9 ^중	김 철	용산구 이촌동 307-7
신사동	442-3	110	125 ^중	조 일 문	대전시 원동 20-8
반포동	214-1	108	134 ^중		
"	214-2	108	30	정진환 외 1	용산구 한남동 653-70
"	215-1	108	140	박 승 열	종로구 인사동 194
"	216-1	108	131	백승복 외 1	마포구 서교동 479-6
"	216-1	108	309.3	김 인 식	중구 신당동 405-5
신사동	439-1	140(가)	597.1 ^중	조 용 시	관악구 동작동 13-7
			475.7 ^중		
			11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8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 호 (76.10.2) 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 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아담와 같이 지정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에 공한

다.

1978.12.21

서울특별시 장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내역
 - 가. 사업시행자 : 라이포주(주) 조 내 백
 - 나. 사업시행구역의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1-290번지 일원 (별첨 54 필지 6,334평)
- 다. 사업제외개요
 - 사업명 : 아파트 빌 주구상가 건물
 - 사업규모 : 아파트 24-44명형 252세대 주구센타 1동 3층

• 사업비 : 10,803,360천원
 • 사업기간 : 79.2.1 - 80.12.31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
 78.12.22 - 78.12.28 (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시행지적목록

동명	지번	면적	소유자		
			주	소	성명
여의도동	1-140	514 평	강남구 잠실 2동아파트 279동 105호		고광익외 2인
"	1-653				
"	1-664				
"	1-665				
"	1-654	145 평	서대문구 불광동 359-20		안필준
"	1-655	149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벽
"	1-656	148 "	"		"
"	1-657	145 "	"		"
"	1-658	149 "	"		"
"	1-659	116 "	마포구 신수동 89-31		이창수
"	1-660	110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벽
"	1-661	110 "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15동 403호		노정호
"	1-662	110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벽
"	1-663	110 "	"		"
"	1-270	115 "	영등포구 화곡동 362-88		김계순
"	1-271	115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벽
"	1-272	115 "	"		"
"	1-273	115 "	"		"
"	1-274	114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이상선

동명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여의도동	1-275	114평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벽
"	1-276	115 "	"	"	"
"	1-277	115 "	"	"	"
"	1-278	116 "	"	"	"
"	1-279	116 "	"	"	"
"	1-141	111 "	"	"	"
"	1-280	116 "	"	"	"
"	1-281	116 "	"	"	"
"	1-282	116 "	"	"	"
"	1-283	114 "	"	"	"
"	1-284	39 "	"	"	"
"	1-285	102 "	"	"	"
"	1-161	75 "	"	"	"
"	1-289	14 "	"	"	"
"	1-288	17 "	"	"	"
"	1-287	115 "	마포구 서교동 342-9		오금순
"	1-286	115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벽
"	1-142	111 "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23		최호만
"	1-290	97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내벽
"	1-291	30 "	"	"	"
"	1-294	86 "	"	"	"
"	1-295	116 "	"	"	"
"	1-296	114 "	"	"	"
"	1-297	114 "	"	"	"
"	1-298	115 "	"	"	"
"	1-299	115 "	"	"	"

동 명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여의도동	1-300	112 평	영동포구여의도동서울아파트 1동 1002호	전 유 승
"	1-301	59 "	영동포구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 내 벽
"	1-293	52 "	"	"
"	1-160	19 "	"	"
"	1-292	3 "	영동포구여의도동서울아파트 1동 1002호	전 유 승
"	1-1015	356 "	영동포구여의도동 1-146 라이프주택(주)	조 내 벽
"	1-1016	216 "	"	"
"	1-1017	174 "	"	"
"	1-1018	352 "	"	"
계			54 필지	6,334 평
라이프주택소유			41 필지	4,879 평

◎ 서울특별시고시 제 679 호

관계인에게 보인다.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허가

1978. 12.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39 호 (78.12.7)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 허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4-2, 794-4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주차장)
- 3) 시행자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86번지 임 배 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96번지 최 기 옥
- 4) 사업기간: '78.12.22-'79.1.10

<p>5) 면적 : 1,436.7 평방미터 (434.6 평)</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명세 : 별첨 (생략)</p> <p>7) 위치 및 계획명면도 : 별첨 (생략)</p> <p>8)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0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지 적 승 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p>	<p>서울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 시청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12.22.</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p>
--	--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중보	2	141	15	1,400	세종로 (중1-1)	적선동 52-2	중2-141 노선 1,400 ^평 는 실거리로 500m 임 노선연장 (300 m)
변경	"	1	202	20	850	"	사직동 (대 1-40)	포함정산거리 850m 임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1 호</p> <p>도시계획시설 (광장 및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145 호 (78.6.15) 및 제 320 호 (78.10.25) 로 결 정고시된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p>	<p>(광장 및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2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p>
---	---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보인다.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978.12.23
 서울특별시장

가. 광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이수광장	81	관악구동작동인대	113,000	
변경	"	81	"	108,000	

나. 도로지적승인조서

등급	류별	번호	복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광로		61	50	2,490	동작동이수광장	사당동 82 광장	
"		55	50	5,000	사당동 82 광장	시흥군판문리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68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45 호
 (78.10.20)로 결정고시된 도시
 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규
 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중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8.12.23.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승인조서								
구분	종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로	2		8미터	430미터	이 화 동 10-2	이 화 동 9-312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683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 건설부고시 제 131호 (76.8.2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56호 (76.10.2)로 아파트지구 지적 승인된 강남구 반포동, 서초동아파트지구 (제 3-2주구) 일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조 동법시행령 제 24조, 제 45조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1978. 12. 21.

서울특별시장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내역

가. 사업시행자 :

삼호주택(주) 조 용 시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강남구 반포동 133번지의 일원 (제 3-2주구) 일부지역 (목록별 첨 : 44,208.1평)

다. 사업계획개요

○ 사업명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

○ 사업규모 :

아파트 25평형, 2,500세대

○ 사업비 : 61,891,480천원

○ 사업기간 :

79.1. . ~ 80.12.31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

78.12.22 ~ 78.12.28 (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주택국 (주택행정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O 아파트지구 지적 및 사용 동의내역					
지 번	면 적	소 용 주		사용동의여부 및 동의일자	
		성 명	주 소		
반포동 133	229.2	고 원 도	중로구신문로1가58-9		
서초동111	가 1,095.5	주 북 봉	도봉구미아동534-105		
112					
113-1					
-2					
119					
반포동120	195.9	정 몽 구	용산구한남동1-304		
452-6	356.5	"	"		
-7					
서초동104-6					
108-3	가 193.7	정 몽 구	용산구한남동1-304		
109-2	나 152	"	"		
110-1					
143-2	86.2	윤 종 건	성북구동선동1가82		
143	가 118.9	삼 호 주 택	관악구동작동13-3	신청인소유	
	나 289.3				
	다 212.4				
144-1	가 106.5	이 정 순	김포면강정리24		
-3	나 151.6				
144-2	219.9	윤 창 남	중구신당동236-41		
-3	155	이 소 영	중구신당동349-75	3,582.6(620.6)	
151-1	가 419	정 몽 구	용산구한남동1-304		
-3	나 241				

지 번	면 적	소 유 주		사용동의여부 및 동의일자
		성 명	주 소	
서초동 108-2 } 106-5 } 가 109-1 }	353.8	삼 호 주 태	관악구 동작동 13-3	신청인 소유
반포동 450 } 451 } 439-2 } 444-1 }				
서초동 124 } 122 } 123-2 } 123-4 }				
반포동 436-3 } 서초동 140-2 } 118-2 } 125 } 121 }				
118-3 } -4 } 140-1 } 123-1 }	6,714.3	조 봉 구	관악구 방배동 1-11	사 용 동 의
반포동 447 } 449 } 437 } 438 } 436-2 }				
				21,115(20,455)

지	번	면적	소유주		사용동의여부 및 동의일자
			성명	주소	
	448	2,004.3	조봉구	관악구방배동1-11	사용동의
	452-2				
서초동	118-1	332.8	서울석유	중구장충1가31-1	
	126-8	184.4	문성환의 3인	강남구반포동470	
	126-2가	135.5	삼호주택조용시	관악구동작동13-3	신청인소유
	나	172.8			
	126-1	84.8	이조경	도봉구수유동130-20	
	139	150.3	삼호주택조용시	관악구농각동13-3	신청인소유
	126-3가	373.5	"	"	"
	나	227.5			
	145-5가	294.5	"	"	"
	나	215.2			
	138	36.2	경배근의 1인	신사동공무원APT1동756호	
	146-2	181.9	임명환	강남구서초동146-2	
	149-2가	154.7	삼호주택조용시	관악구동작동13-3	신청인소유
	나	225.9	"	"	"
	127	187	건양기업	중구충무로2가5	
	136	150	삼호주택조용시	관악구동작동13-3	신청인소유
	136-7	142.5	"	"	"
	-8				
	136-1	142.5	"	"	"
	-9				
	128	233.2	김익준	성동구홍익동145	
	126-4	264	민현식	성북구종암동165-36	
	-5	145.2	송순봉	서대문구남가림동145-87	

지 번	면 적	소 유 주		사용동의여부 및 동의일자
		성 명	주 소	
서초동 126-7	가 140.1	민 현 식	성북구종암동 165-36	-
	나 122.5			
	다 101.2			
126-11	343.7	삼호주택조합	관악구동작동 13-3	신청인 소유
-9	189	신 상 철	성북구안암동 1가 82	
-6	165.4	유 하 민	서대문구용암동 102-77	
-10	130.5	정길순의 1인	울산시육교동 153-2	
137	93.6	삼호주택조합	관악구동작동 13-3	신청인 소유
129	339.8	윤정선의 1인	서대문구현저동삼5번지	
130	가 478.6	"	"	
	나 264			
산 189-1	1,667	한 양 주 택	영등포구여의도동 1-885	
-3	323	이 규 덕	용산구갈월동 14-82	
반포동 312-3	380	서 울 시		
-2	2,765.8	"		
311-1	373.2	"		
327-2	44.4	"		
312-1	66.8	안 재 국	중구왕학동 72-2	
313-1	179.2	라이프개발	영등포구여의도동 1-146	
332-2	120	서 울 시		
-3	709	"		
366-1	576.7	"		
367-1	416.5	"		
380-1	81.9	"		
-3	178.2	"		

지 번	면 적	수 용 자		사용동의어부 및 동의일자
		성 명	주 소	
반포동 378-1	114	서울시		
" 368-3	2,270	한양주택	영등포구여의도동 1-385	
" 152	60.5	김윤옥의 1명	중구 신당동 405-27	
" 106-5	121.6	삼호주택조용서	편악구동작동 13-3	실청인소유
" 108-2나				
" 109-1				
" 334-1	398	서울시		
" 332-1	75.2	"		
" 427	202.4	명한용	강남구 도곡동 28-39	

○ 서울특별시고시 제 684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62 호(78.9.11)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기간 연기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변경허가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

197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강남구 양재동 산 73-3 외 10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
(주) 금성사 주차장건설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설명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2번지
(주) 금성사 대표이사 박승환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착공: 1978년 9월

변경착공: 변경허가후 10일 이내

당초준공예정일: 1978년 10월 31일

변경준공예정일: 1979년 6월 30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생략)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685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변경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34 호(78.7.5)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변경 및 사업기간 연기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를 변경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 제26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강남구양재동 539번지의 1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설

다. 사업의 규모(면적): 5,971평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당초: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2가9번지
건양기업(주) 대표 손용현

변경: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2가9번지
건양기업(주) 대표 방지영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일자: 1978.7.10

당초준공예정일: 1978.11.30

변경준공예정일: 1979.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686 호

노거수지정해제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목을 노거수 지정해제 하였던 기 이를 고시한다

1978.12.26

서울특별시장

1. 지정구분 및 번호: 노거수제81호

2. 소재지: 중구도동2가 66번지

3. 소유: 국유지

4. 해제사유: 자연고사

5. 해제년월일 및 해제기관:

1978.12.26

서울특별시장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477 호

주택개발을위한제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변경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228호(78.5.23)로 주택개발을 위한 제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A/D차분사업으로 시행중인 옥수1구역에 대하여
2. 동구역내 공공시설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 토지에 한하여 형태 및 면적변경이 있어 도시계획법41조 및 65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3. 공람기간내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본 공고내용으로는 사용수익을 할수 없으며 본 공고에 대한 서류상달은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에 비치하고 공람한다.

1978.1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478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46 호(78.5.

29)로 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541호(78.10.13)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동법 제 57조의 2 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2.21.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사업완료내역)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이동 290-1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대흥교통주식회사 정류장)
3. 사업시행면적 : 2,217평방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방이동 267번지 주식회사 대흥교통 대표이사 이기환
5. 사업시행기간 : 78.10.15 - 78.11.15.
6. 준공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47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433 호(78.8.26)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 제 57 조의 2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2.21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사업완료내역)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강남구장지동 611-3외 10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대규모가각정리공사)

3. 사업시행면적: 3,103평방미터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천호출장소장

5. 사업시행기간: 78.7.13-78.11.13

6. 준공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0 호

제 2 종전기공사면허실효

전기공사법 제 30 조 5 호 및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면허가 실효되었기 공고한다.

1978.12.19

서울특별시장

다 음

종별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면허실효일자
제 2 종	제 30 호	창일산업(주)	양윤식	종로구낙원동 284-6	78.12.19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2 호

영동 1, 2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공람공고

1. 건설부공고제 72 호(71.8.20) 및 제 38 호(77.4.2)로 변경 시행인

가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영동 1,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 지구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일부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한다.		단위:평
* 변경내역 *				
지구명	시행면적	변경		비고
		면적	위치	
영동1지구	5,128,091	678,989	영동아파트지구 1지구 및 3지구	아파트지구내공 공시설변경
영동2지구	3,954,237	463,479	영동아파트지구 2지구 및 4지구	
1978.12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공고제 483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환로공고		다		
1. 서울특별시고시제 335 호 (78.7.5) 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된 도봉구번동 499-2 의 1 필지에 대한 한성운수주식회사 시내버스주차장부지 점지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제 57 조 2 항 및 제 85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도봉구번동 499 의 1 필지 2. 사업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한성운수(주) 시내버스주차장점지공사 3. 사업시행면적: 1,683 평 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도봉구번동 455-2 한성운수(주) 김 인 석 5. 사업의착수준공 년월일 가. 착수년월일: 1978.7.5 나. 준공년월일: 1978.12.20 6. 공사완토도면: 생략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486 호		
1978.12.22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서울특별시		공업표준화법제 21 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처분된 아래 업체에 대해
 등 처분을 해제하고 표시품 생산을
 계속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78.12.22

서울특별시
 가. 허가번호 : 제 1401 호
 나. 허가일자 : 76.12.30
 다. 제조업체명 : 일진금속(주)
 라. 대표자 : 허진규
 마. 소재지 :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6가 45
 바. 규격번호 : KSD6759
 사. 품 명 :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아. 규 격 : 5종 보통급

자. 취분일자 : 78.6.28
 차. 해제일자 : 78.12.22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7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3 호의 규정에 의거 전
 기용품 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8.12
 서울특별시

업 체 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 재 지	허가일	제조구분	취소사유
주신아산업	성찬용	5-20-가	영등포구독산동 203	72.12.9경신	소형전동기류	법 제 7 조 항 위반


◎ 서울특별시 공고제 488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공인을 아내와 같이 신
 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8.12
 서울특별시

1. 사용개시일자 : 1978.12.23
 2. 인 영 : 다 음

공 인 의 인 영



서울특별시소방관장계위원회직인

<p>인 영</p>		<p>법제 25조 및 동법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의한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8.12 서울특별시장</p>			
<p>공 고 일 정</p>	<p>제 인</p>	<p>공 랑 계 요</p>			
<p>○ 서울특별시공고제 489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167 호(76.7.19)로 시설결정 고시된 하월곡1동 88번지 주변도로정비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p>		<p>1. 사업장위치: 성북구하월곡1동 88번지주변도로</p> <p>2. 사업의종류와명칭: 하월곡1동 88번지 주변도로정비 공사</p> <p>3. 사업의규모: B=6m L=286m A=12.1m</p> <p>4.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78.12.2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p> <p>7. 토지또는 건물의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 3항의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따름</p> <p>공사토지가격조서</p>			
<p>번 호</p>	<p>소 계 지</p>	<p>지 목</p>	<p>수용 면적</p>	<p>소 유 자</p>	
<p>1 2</p>	<p>성북구하월곡1동88의15 하월곡1동88의556</p>	<p>도 ·</p>	<p>528㎡ 84㎡</p>	<p>주 소</p> <p>성북구사근동159 정음군정주음수정리</p> <p>성명</p> <p>서울특별시 정 방 국 정 상 국</p>	

○ 서울특별시 공고제 490 호

도시재개발사업무코제 4, 5지구
규약및사업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 198 호 (77.6.28) 에
의거 재개발사업실시 계획인가된 무
코제 4, 5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사업기간자금조달
계획) 규약의 일부를 변경코자 도시재
개발법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공람공고합니다.

1978.12.26

서울특별시 장

변 경 내 용

○ 사업시행기간

당초 : 77.8.1 - 78.12.31

변경 : 77.8.1 - 80. 6.30

사유 : 공사기간 부족으로 기한 연장

○ 사업시행계획서

(2) 재원조달계획

당초 : 당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현
재 소유하고 있는 코오동빌딩 (종로
구룡의동 35-34) 을 매각한다.

변경 : 당시와 삼경물산(주) (지구내
토지소유자) 는 공동으로 총사업비를
투자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사유 : 물가상승의 이유로 건축비의
부족

○ 규 약

제 8 조 (비용의 부담)

당초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
하기로 한다.

변경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
생하는 비용 및 건축비는 시행자
(주)코오동과 삼경물산(주)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

사유 : 상 동

○ 공람장소

서울특별시도시정비국도시정비과
(75-6827)

(주)코오동 (나이롱) (75-7181,741-3492)

○ 서울특별시 공고제 491 호

도시재개발사업광화문구역사업
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 127 호 (77.4.27)에
의거 재개발사업실시 계획인가된 무
코제 4, 5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코자 도시재
개발법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공람공고 한다.

1978.12.26

서울특별시 장

변 경 내 용	2 . 공 랑 장 소
<p>1 . 사 업 시 행 기 간</p> <p>당 초 : 77.4.27 - 78.12.31</p> <p>변 경 : 77.4.27 - 80. 6.30</p> <p>사 유 : 부 지 매 입 부 진 및 지 장 물 철 거 지 연 으 로 공 사 기 간 지 연</p>	<p>서 울 특 별 시 도 시 정 비 국 도 시 정 비 과 (75-6827)</p> <p>대 한 교 육 보 험 주 식 회 사 건 축 부 (7D-6858)</p>